영등포구의회
제194회 임시회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6. 4. 29.

行 政 委 員 會
專門委員 金基永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59호로 2016년 4월 2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4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영등포구의회 의결 후 시행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도림동 복합 어르신 복지센터 증축】

기존 노후된 구립 모랫말 경로당 리모델링 및 증축을 통해 어르신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주·야간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밀착형 복합복지시설을 건립하여 공공건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대시키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어르신복지서비스 구현.

【증축 내역】

구분	면적(㎡)			용 도	비 고
	합계	현재	증축		
계	892.56	650.55	242.01		
1층	130.65	168.30	△37.65	사무실,상담실,물리치료실	
2층	176.43	172.50	3.93	경로당(남,녀), 주방	경로당
3층	176.43	172.50	3.93	전산교육실, 프로그램실	소규모 노인복지관
4층	176.43	137.25	39.18	다목적 강당	
5층	**182.13**	**0**	**182.13**	**데이케어센터(생활실)**	**주·야간 보호시설**
6층	**50.49**	**0**	**50.49**	**세탁실, 일광욕실**	

4. 공유재산 관리계획 계상 재산

○ 도림동 복합 어르신 복지센터 증축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백만원)	취득시기	비 고
지목	소 재 지	토지면적	증축면적			
대지	도림동 205-23 (도영로 41)		242.01㎡	2,068	2016	지상4층 ⇒ 지상6층 (2개층 증축)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

6. 검토의견

○ 본 안건은 도림동에 위치한 구립 모랫말 경로당을 2개층 증축 및 리모델링하여 경로당, 소규모 노인복지관, 주·야간 보호시설 등 복합시설로 전환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 층별 건물 용도는 1층은 사무공간, 상담실이 들어서고, 2층은 경로당, 3,4층은 전산교육실, 프로그램실, 다목적강당 등 소규모 노인복지 시설, 5,6층은 생활실, 세탁실, 일광욕실 등 주·야간 보호시설이 배치되는 복합 어르신 복지센터임.

○ 현재, 영등포구에는 구립경로당 41개소, 소규모 노인복지관 2개소[1], 주·야간 보호시설 9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영등포구의 65세이상[2] 노인 인구 비율이 2013년 11.7%에서 2016년 13.5%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

구 분	2013.3월	2014.3월	2015.3월	2016.3월
전체인구 (명)	390,890	385,993	382,665	378,445
65세이상인구 (명)	46,117	47,985	49,915	51,240
비율(%)	11.7	12.4	13.0	13.5

1) 구립영등포어르신복지관(영등포본동), 구립여의도복지센터(여의동)

2)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 및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65세 이상이므로 이를 고령화 연령 기준으로 함.

○ 따라서, 노인들의 취미, 여가, 건강관리 등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와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를 위한 주·야간 보호시설은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총 소요예산은 20억 6,800만원으로 시비보조금 20억, 구비 6,800만원임.

- 시비 20억 중 10억은 주·야간 보호시설 설치 명목으로 2015년도에 교부받아 명시이월 하였고, 나머지 10억은 소규모 노인복지관 설치 명목으로 2016년도에 교부되어 간주처리 예정임.

- 구비 6,800만원은 2016년도 세출예산 등에 이미 확보되어 있어 사업 추진상 재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영등포구 주·야간보호시설

연번	시 설 명	주 소	정원	운영법인 (또는 개인)
1	구립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병설 데이케어센터	도림로 482 (문래동3가)	36명	학교법인 일송학원
2	구립영등포노인케어센터 병설 엘림데이케어센터	도림로 482 (문래동3가)	28명	사회복지법인 엘림복지회
3	구립영등포 데이케어선터	선유서로 34길 10 (양평동3가)	30명	사회복지법인 한국노인복지회
4	구립영등포 실버케어센터	가마산로 514 (신길4동)	7명	사회복지법인 엘림복지회
5	구립당산 데이케어센터	국회대로 28길 17 (당산동3가)	21명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6	구립여의도원광 데이케어센터	여의대방로 68길 15 (여의도동)	28명	재단법인 원불교
7	구립영등포치매전문 데이케어센터	당산로29길 9, 5층 (당산동3가 407)	21명	사회복지법인 윤혜복지재단 (서울시 인증)
8	우리집 데이케어센터	디지털로 398 3층 (대림동)	18명	개인
9	마더케어센터	도림로313,다동106호 (신길동, 건영아파트)	11명	개인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구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